

공결 안내

1. 학사운영규정

27조(공결) ①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출석을 점검한 결과 결석임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. <개정 2021.2.22.>

1. 「병역법」 및 「예비군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(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포함한다)된 경우. 이 경우 소속 학부·학과의 장 및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생에게 소집 기간 동안 출결, 성적처리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안되며, 교과목 담당교원은 수업결손이 발생한 학생에게 학습자료 제공 등 학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<개정 2023.6.16.>, <후단신설 2024.3.1.>
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각종 공식행사에 총장이 허가하여 참가하는 경우 <개정 2023.6.16.>

가. 체육특기자가 학교대표로 참가하는 전국규모 대회 (신설 2023.6.16.)

나. 국내·외 각종 학술대회, 교류행사 등 (신설 2023.6.16.)

3. 학교 밖 수업 등에 따라 다른 교과목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(다만, 학교 밖 수업 등을 운영하는 교과목의 담당 학부·학과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) <개정 2021.2.22.>

4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

5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

가. 본인의 결혼 : 5일

나.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: 1일

다. 본인의 출산 : 20일

라. 본인 배우자의 출산 : 10일 <개정 2022.7.21.>

마.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: 20일

바.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: 5일 <개정 2022.7.21.>

사.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: 3일 <개정 2022.7.21.>

아.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: 3일 <개정 2022.7.21.>

자.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: 1일

6. 취업을 위한 채용시험 응시 및 면접 등에 참석하는 경우 (신설 2023.6.16.)

7. 학기 당 4일 이내(월 1일에 한함)의 생리 공결의 경우. 다만, 시험 또는 각종 평가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 (신설 2023.6.16.)

8. 기타 상당한 이유로 학부·학과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[중전 제6호에서 이동 <2023.6.16.>]

② 제1항에 따라 공결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학부·학과의 장 또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3.6.16.>

③ 제2항에 따라 승인된 공결일 수가 결석일 수와 합하여 해당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결을 인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1항 제2호 제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26.3.1.>

[중전 제27조에서 이동 <2018.2.22.>]

[전문개정 2018.2.22.]

[제목개정 2018.2.22.]

[제28조에서 이동, 중전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 <2021.2.22.>]

④ 그 밖에 공결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. [중전 제3항에서 이동 2026.3.1.]

2. 공결처리 절차

- 1) 공결 사유 발생에 따른 증빙서류 및 신청서 학과사무실 제출(학생→학과)
- 2) 학과 사무실에서 받은 승인 서류 공결확인서 전달(학과→학생)
- 3) 공결 해당 교과목 교수님,강사님께 전달(학생→담당 교원)

3. 인정 가능 공결 사유 및 증빙 서류 안내

- 1) 신청 방법: 사유 발생 5일 이내 학과 사무실로 공결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
- 2) 인정 공결 사유 일수 및 증빙 서류

공결 사유			공결 인정 기간	증빙 서류
병역법 및 예비군법 등에 정한 병역 동원 또는 훈련(신체검사 포함)			해당일	훈련참가확인서, 신체검사 확인서,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
총장 허가 참가 행사			해당일	관련 공문 및 참가 확인서 등
교외 수업 참가			해당일	학과장 협조 공문 및 참여확인서 등
감염병에 따른 입원(법정 전염병 붙임 문서 확인)			진단일	입원,퇴원 확인서 각 1부, 의사 소견서 등 ·전염성 질병에 한함.
경조사	결혼	본인	5일	사유 발생 증빙 서류
		본인의 직계족속 속	1일	
	출산	본인·배우자	10일	
		본인	20일	
	입양	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	5일	사망진단서,가족관계 증명서
		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	3일	
	사망	본인의 자녀 또는 본인 자녀의 배우자	3일	
		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	1일	
취업을 위한 채용 시험 및 면접 응시			해당일	채용 시험 또는 면접 참여확인서, 채용 관련 안내문
생리공결 다만, 시험 또는 각종 평가시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			학기중 최대 4회*월1일	없음
기타 사유로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			해당일	해당 사유 증빙서류 *단순 병원 진료 불가